HALLA VIVALDI 시공예정사

[가칭]도산하늘정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문

[조합원 모집공고일 : 2022.05.05.]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조합명 : [가칭]도산하늘정원 지역주택조합
■ [가칭]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공고이며, 최초 공고일 자는 2022년 05월 05일입니다.
신고번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022-주택과-지역주택조합모집-1
■ 주택법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주택법 제11조의3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7조의4]에 의거하여 조합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사업예정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10번지 일원이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고, 관련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 착오 등의 행위에 대하여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원 모집 주체 [추진위원회·조합 발기인]

추진위원회	단체명	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407, 3층(월전동)
	추진위원장	공병두
	고유번호	177-80-02237
	발기인명단	공병두, 박서영, 김영호, 김성춘

02 업무대행자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자	상호	유한회사 믿음디앤씨 부동산중개법인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25-1, 1층 101호
	등록번호	237-86-01852
	대표자	김영옥

0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10번지 일원
사업면적	13,971.00㎡

※ 상기 사업면적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사업	도로	비고
1	도산동	704-6	답	223	223	223	-	
2	도산동	704-8	답	26	26	26	-	
3	도산동	709-1	답	820	820	754	66	
4	도산동	709-2	전	292	292	261	31	
5	도산동	709-11	답	498	498	447	51	
6	도산동	709-12	답	100	100	100	-	
7	도산동	710	답	3,332	3,332	3,228	104	
8	도산동	711	종	283	283	283	-	
9	도산동	711-1	도	15	15	15	-	
10	도산동	712	대	331	331	331	-	
11	도산동	713	대	294	294	294	-	
12	도산동	714-1	답	377	377	377	-	
13	도산동	714-2	답	476	476	476	-	
14	도산동	714-3	답	220	220	220	-	
15	도산동	714-4	대	100	100	100	-	
16	도산동	714-5	도	14	14	14	-	
17	도산동	715	대	274	9	9	-	
18	도산동	716	대	369	361	361	-	
19	도산동	717	대	628	628	628	-	
20	도산동	719	대	205	183	183	-	
21	도산동	720	대	159	145	145	-	
22	도산동	722	대	317	317	317	-	
23	도산동	723	대	134	134	134	-	
24	도산동	723-1	대	122	122	122	-	
25	도산동	723-2	대	120	120	120	-	
26	도산동	723-3	도	54	54	54	-	
27	도산동	724-1	대	288	288	288	-	
28	도산동	724-2	도	7	7	7	-	
29	도산동	725	답	783	783	783	-	
30	도산동	726	대	995	966	966	-	
31	도산동	727-1	답	284	203	203	-	
32	도산동	727-2	도	20	17	17	-	
33	도산동	737-9	답	459	458	458		
34	도산동	789-6	답	629	629	404	225	
35	도산동	789-8	전	53	53	-	53	
36	도산동	790-4	답	561	561	-	561	
37	도산동	804-5	답	255	255	-	255	
38	도산동	804-6	답	107	107	28	79	
39	도산동	805	답	697	697	540	157	
40	도산동	806-2	답	13	13	1	12	
41	도산동	1237-6	구	1,319	708	707	1	
42	도산동	1250-4	도	68	43	43	-	
43	도산동	1250-11	도	117	117	97	20	
44	도산동	1252	도	160	160	160	-	
45	도산동	1252-2	도	151	47	47	-	
합계				16,749	15,586	13,971	1,615	

※ 토지 목록 및 편입비율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및 계획

구분	필지수	면적(㎡) 공부		사업		용도	비고
사유지	37	14,065.00	88.57%	12,917.00	92.46%	공동주택	
국유지	5	1,815.00	11.43%	1,054.00	7.54%	공동주택	
총합계	42	15,880.00	100.00%	13,971.00	100.00%		

※ 상기 토지 비율 및 면적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 대지면적 & 비율 면적(㎡)	비율(%)	비고
확보	사유지	7,539.00	53.96	토지사용권원 기준 (토지사용승낙서)
	국유지	-	-	
미확보	사유지	5,378.00	38.50	
	국유지	1,054.00	7.54	
합계		13,971.00	100	

※ 상기 토지확보 면적·비율은 2022년03월22일을 기준으로 토지사용승낙서등 기 체결건을 기준하였습니다. ※ 토지확보현황(면적·비율)등과 관련한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약정서 등)는 주택홍보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립인가 신청 전 : 토지 사용권원 80%이상, 토지 소유권 15%이상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 토지 소유권 95%이상 확보 / 착공 신고 전 : 토지소유권 100% 확보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 국공유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소유권 이전 확보 완료할 예정입니다. ※ 토지확보 계획 및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사업명	[가칭] 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10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비행안전제5구역 / 상대보호구역		
전체대지면적	15,586.00㎡	건축면적	2,540.00㎡
사업대지면적	13,971.00㎡	건폐율	18.18%
기부체납(도로)	1,615.00㎡	용적률	177.50%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전체
연면적	35,107.95㎡	520㎡	35,627.95㎡
지상연면적	24,307.95㎡	520㎡	24,827.95㎡
규모	아파트 : 지하 1층 ~ 지상 15층 / 근린생활시설 : 지하 0층 ~ 지상 1층 아파트 : 4개동 / 근린생활시설 : 1개동		

구분	세부내용	면적(㎡)
부대복리시설	기계 / 전기실	300.00㎡
	경비실 / 방재실 / 택배	50.00㎡
	경로당	150.00㎡
	MDF실	30.00㎡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520.00㎡

※ 상기 비주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공급규모, 세대수, 층수와 세부계획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84㎡A	84㎡B	합계
세대수 (예정)	103	117	220

※ 상기 주택건설예정 세대수는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1) 모집예정 세대수

모집 세대수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80% (175세대)

2) 모집기간

모집기간	2022년 05월 06일부터 ~ 조합원 모집 완료 시 까지

※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모집 기간 마감 후 모집 세대수와 상관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공고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후 공동주택의 잔여 세대가 30호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으며, 30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0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면적
84㎡A	84.95㎡	24.50㎡	4.68㎡	45.46㎡	159.60㎡	62.60㎡
84㎡B	84.93㎡	24.50㎡	4.68㎡	45.44㎡	159.56㎡	62.58㎡

※ 상기 내용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측량성과 등의 사유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은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며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은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 조합가입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원 자격유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까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 · 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 상기 내용 외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모집 시, 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조합원 자격(거주지역, 무주택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국토교통부와 청약홈의 주택 전산망 검색과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가입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제출]
		인감도장	-	계약서 작성 날인
		목도장	1개	제출용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초본	1부	이전주소 전체 표기, 세대주 관계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인감증명서	5부	조합가입계약서, 동의서 첨부 및 관공서 제출
		재산세 납입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배우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첨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초본	1부	이전주소 전체 표기, 세대주 관계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재산세 납입증명서	-	
	주택보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조합원 주택소유 자격확인 필요 서류 분리세대 배우자 포함 분양전환 임대포함
		건축물대장	-	
		입주·분양권 계약서	-	
	대리계약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첨부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제출]
		위임장	-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제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가입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조합원 가입 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철회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3) 신청일시 및 장소

일시	2022년 05월 06일 ~ 조합원 모집 완료시 까지 [오전10시 ~ 17시까지]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7, 주택홍보관

※ 주택조합 신청 철회 및 신청금 반환은 주택법 제11조6에 따르며 주택조합 가입신청 후 신청금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상기 계약일정은 조합원 조기 모집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9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주택형	층별(층)	조합원 분담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3차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잔금	합계(100%)
		계약시	체결 후 7일 이내	창립총회 후 30일이내 무이자	별도 지정(중도금 1차~3차 이자 후불제)			무이자(중도금 4차~6차 무이자)				
84㎡A	1	10,000	35,000	45,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91,000	403,000
	2-3										99,000	411,000
	4-5										107,000	419,000
	기준층										115,000	427,000
84㎡B	1	10,000	35,000	45,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91,000	403,000
	2-3										99,000	411,000
	4-5										107,000	419,000
	기준층										115,000	427,000

※ 2차·3차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기일 이후에 납부 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서 제18조[연체료]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30,000,000원,VAT별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은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 주택형별 세대당[₩20,000,000원(VAT별도)]으로 향후 별도 계약하며 계약시점에 납부일정 및 자금집행 할 수 있다.
※ 분담금 중 잔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총회를 통해 동·호수 지정이 완료된 이후 지정된 층별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에게 납부일정을 별도 통지할 의무를지지 않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정절차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단위세대 면적변경에 따른 분담금 총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는 현재 조합원 모집에 따른 예정일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지방교육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채권매입 또는 할인료, 보존등기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별 부담으로 합니다.
※ 조합원 분담금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취 등록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료, 재산세 등), 사업계획 승인 시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단지 외곽도로 개설비, 공원, 완충녹지 조성공사비, 인입공사비,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 등), 관계 법령의 변경 및 강화된 건축기준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각종 부담금, 개별보존등기비, 조합의 요청 또는 합의에 의해 추가되는 시설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생 시 분담금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공부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확정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상기 분담금 중 중도금 1차,2차,3차에 대한 은행권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자 후불제 - 입주 전 조합원 개별 이자 납부 원칙) 대출 미신청자 또는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가입 조합원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 일자는 대출은행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도금 납부 일자가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일반에게 분양하며 조합 청산 시 정산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향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자란 표시내용
계약금(신청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954201-00-073757	㈜무궁화신탁	★계약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예)"홍길동840320"
조합원 분담금 납부계좌		954201-00-073773	㈜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납부계좌		954201-00-073760	㈜무궁화신탁	

※ 납기일 내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은 상기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 이외 납입 및 입금자와 계약자 이름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상기 "입금자란 표시내용"의 예시와 같이 계약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계좌별로 입금한 금액(계약금,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에 대하여 "모집주체"가 목적에 맞게 자금관리계좌 간 이체 할 수 있다.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구분		상호	대표자	주소
자금관리 대리사무	등록번호 110111-286741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권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 조합과 ㈜무궁화신탁이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 및 안정적 진행을 통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합니다.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당첨자 발표일시	2022년 05월 13일 [오후 03시 30분]
당첨자 발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7, 주택홍보관
당첨자 발표방법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계약금 선 수위 입금자로 하며, 당첨 여부는 개별 통보함

※ 당첨자 발표 이후 조합원이 모집공고 세대 수 미만일 경우 모집이 완료 될 때가지 모집 후 추가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 가입 확정시기(조합원 자격 적격여부)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카페 및 조합사무실 게시하며, 조합원 자격이 부적격시 개별 안내 문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조합원 확정 게시일	장소 및 방법
조합설립인가 이후 15일 이내	조합카페 및 조합사무실 게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15일 이내	조합카페 및 조합사무실 게시
입주검사 이후 15일 이내	조합카페 및 조합사무실 게시

※ 국토교통부 및 청약홈의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서 적격 여부(조합원 지위 유지)를 결정합니다.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와 청약홈의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서 부적격판정을 받고, 소명 기간이 부여된 경우 그 기간에 소명(조합원 자격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적격판정 후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후에도 부적격자로 판정될 때 조합원 자격 자동 취소됩니다.
3)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4)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가입계약서에서 정하는 자격상실·제명에 해당할 때는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5) 해약 및 탈퇴, 제명으로 환급 시 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금은 해당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처리합니다.
6) 주택조합 신청 철회 및 신청금 반환은 주택법 제11조6에 따르며 주택조합 가입신청 후 계약금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초일 산정 제외)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7) 가입자의 사유에 따른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 자진 탈퇴, 계약해제(해지) 등의 경우 납입한 계약금,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이전인 경우 3차 계약금 납입 전에는 위약금으로 1~2차 계약금의 35%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업계획승인 이전인 경우 전체 계약금의 35%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며, 연체료 및 중도금 관련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조합원의 통장계좌로 반환 지급 한다.사업계획승인 후에는 총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하며 연체료 및 중도금대출 원리금 등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지급한다.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반환 시기는 추가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조합원분담금 등을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3 조합가입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계약일시	2022년 05월 06일 ~ 조합원 모집 완료시 까지 [오전10시 ~ 17시까지]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7, 주택홍보관

※ 주택조합 신청 철회 및 신청금 반환은 주택법 제11조6에 따르며 주택조합 가입신청 후 신청금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상기 계약일정은 조합원 조기 모집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동·호수 배정의 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총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동·호수 배정의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총회를 통해 동·호수를 지정합니다.

※ 총회에서 동·호수 지정 후 그 결과를 조합카페, 조합사무실에 게시하며 조합원 여러분께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5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의 (신청)예정일

구분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2년 10월	2023년 12월	2023년 10월	2026년 06월

※ 상기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 사항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 행사 권리	3.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 행사 권리

※ 탈퇴, 조합원자격상실 및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기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사항		
1. 조합원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 개별납부 의무	2.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	3. 관계 법령, 조합규약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상기와 같이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 등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17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

1.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 본 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 등의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 및 분담금은 관련 법규의 개정, 사업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주의사항
1)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 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번호,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일정 등은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7)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8)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 등의 인·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채 등),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단지 내 포장 패턴, 경비실, 부대 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대지경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및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3)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및 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표현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개발 주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바랍니다. 또한, 인쇄 과정상 제작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조합원 모집자료 상의 평면도와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각종 카탈로그 및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저차 등은 실물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6)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 조감도 및 배치도 등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주변 도로 표현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의 평면과 마감자재 품목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단위세대 평면의 일부 변경 및 마감자재 품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홍보관용으로 실 공사와는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 인쇄물상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 라인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조합원 모집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23)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의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합니다.)

2. 설계 관련 유의사항
1) 아파트 외관 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일부 지붕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2) 각 세대 배치에 따른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변 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4)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아파트 및 지하 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땅파기 후 지내력 시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6)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외관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설치 및 덕트 사이즈 변경 등으로 인해 구조체 및 외관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은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부대 복리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 • 허가에 따라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주민운동시설,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7)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청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가입 탈퇴 및 비용부담 환급의 방법, 절차 등의 확인을 위해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모집공고문 및 사업계획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사업개요, 시공예정사, 각종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만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됩니다.
※ 토지(협의)매입비 증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세대수, 주차장 증설, 기부채납 및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 확보 및 그 계획(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조합해산 등으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 참조 [사용권원(사용승낙)과 소유권 구분]
※ 조합원 모집신고(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 인가(소유권 15% 및 사용권원 80% 이상), 사업계획승인(소유권 95% 이상)

■ 주택홍보관 위치 및 신청장소

시행사	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유한회사 믿음디앤씨 부동산중개법인
주택홍보관 및 신청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7, 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가칭]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ALLA VIVALDI 광산 한라비발디 더 트리플시티 | 총 220세대 |
시행사 (가칭)도산하늘정원지역주택조합 시공사 Halla 주|한라 신탁사 무궁화신탁
문의전화 1533-1801